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4가단52921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12. 8.

판결 선고 2016. 1. 1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602,855원 및 그 중 9,509,343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15,093,512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각 2014. 10. 28.까지는 연 1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하여 : 피고 A는 24,602,855원 및 그 중 9,509,343원에 대하여는 2014. 8.29.부터, 15,093,512원에 대하여는 2014. 9.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0. 체결한 매매계약은 26,975,3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6,975,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3. 11.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간2018. 3.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8. 3. 1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9,500,000원, 보증기간2019. 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4. 15.경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9.경 중앙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2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9,509,3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9. 4.경 농협은행에 이 사건 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5,239,73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농협은행으로부터 146,220원을 회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4. 4. 30.경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4,602,855원 및 그 중 9,509,343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15,093,512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14. 10. 28.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2002다59092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소극재산 역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수원시 C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 A의 적극재산의 시가는 약 3억 4,55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300만 원 + 이 사건 2부동산의 시가 1억 4,250만 원)이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약 2,460만 원, 피고 B에 대한 채무 8,000만원, 남서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억 1,180만 원(이 사건 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34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132,943원이 있었고, 국가에 대한 액수 미상의 미납 벌금 및 세금(이 사건 2부동산에 처분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잠실세무서 명의의 압류가 되어 있음)등이 있었는바, 국가에 대한 액수 미상의 미납 벌금 및 세금을 제외하면 2억51,532,943원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의 실질가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실질적 유일한 재산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2부동산의 시가는 1억 4,25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1억1,180만 원에 불과하고, 국가에 대한 미납 세금 및 벌금 액수는 미상이며,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8,000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바, 미납 세금 및 벌금 액수가 불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2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A의 무자력이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1.

3. 결 론

판사 김경희